

[별표 2] <개정 1999.4.9, 2000.7.27, 2000.12.29, 2001.8.25, 2005.2.28>

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(제15조관련)

1.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

구 분	지 역	전 국
가. 시설기준		
1)저장시설		700킬로리터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
2)수송장비		50킬로리터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
나. 자본금		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

※ 비고 1.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"시·도"라 한다)안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인접 시·도안에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.

2.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(선박급유에 한한다)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.

2. 용제대리점의 등록요건

구 분	지 역	전 국
가. 시설기준		
1)저장시설		150킬로리터이상을 저장할 수 있을 것
2)수송장비		20킬로리터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
나. 자본금		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
3. 주유소의 등록요건

구 분	지 역	서울특별시	기타지역
가. 시설기준			
1)저장시설		4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	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
2)주유기		4대 이상일 것	2대 이상일 것

3)공중화장실	1개소 이상일 것	1개소 이상일 것
4)저장시설과 주 유 기 의 구분설치	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석유제품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. 이 경우 비 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제품으로 본다.	
나. 기 타	시·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도시계획·도로사정·환경여건 등 지역실 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외의 사항(주유소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)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 할 수 있다.	

* 비고 : 공중화장실의 위치·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바에
의한다.

4. 용제판매소의 등록요건

○ 출자총액이 3천만원이상일 것

5.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요건

○ 출자총액이 3천만원이상일 것

6.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요건

구 분	등 록 요 건
가. 저장시설 나. 수송장비	4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10킬로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